

의안번호	제 539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7년 1월 6일

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·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3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(문화예술산업과장)

1. 제안이유

-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, 회의,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거점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.
-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사용주체인 도내 문화예술 법인·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4년 수탁기관 공모를 거쳐 (재)충북문화재단과 위·수탁 협약함.
(협약기간 : 2014. 4.15. ~ 2017. 4.14.)
- 1차 위·수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차 위·수탁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 : 2017. 4.15. ~ 2019.12.31.

나. 위탁사무

-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·관리(인력포함)
- 시설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
-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

다. 시설현황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
- 면 적 : 건물 3,502.36㎡(지하 1층, 지상 5층)
- 공간구성 : 사무실, 대회의실, 소회의실, 소공연장, 주차장 등
- 입주단체 : (재)충북문화재단, 충북예총, 충북민예총
충북문화예술포럼, 충북문화원연합회

라. 소요예산 : 105,950천원

- 도 교부 민간위탁금 : 49,782천원
- 입주단체 임대료 징수금 : 56,168천원

마. 수탁기관 : (재)충북문화재단

바. 위탁방법 :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재위탁 후 위·수탁 협약 체결

사. 수탁기관 선정 :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

아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」 제4조(위탁)

자.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·관리 사무
- 2014. 4.15.~2017. 4.14.(3년) / 117,310천원 / (재)충북문화재단

차. 향후 추진계획

- 수탁기관 선정 및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7년 2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조례

《 지방자치법 》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《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》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《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》

- 제4조(위탁) ① 충청북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
 2.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당초예산 반영